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됨

이에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자격시험 관련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과목)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정하는 전문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내분비
2. 노인
3. 소아
4. 심혈관
5. 감염
6. 정맥영양
7. 장기이식
8. 종양
9. 중환자
10. 통합약물관리

제3조(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환자약물관리, 연구, 교육, 리더십 등 전문과목별 직무역량 및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및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 제2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전문과목에 한정한다.
2.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 제2조 제10호 전문과목에 한정한다.
3. 위 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 제공 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제2조 제10호 전문과목에 한정한다.

제4조(실무경력 인정기관)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 제2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전문과목에 한정한다.
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 제2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전문과목에 한정한다.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 제2조 제10호 전문과목에 한정

한다.

제5조(시험의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전문약사 자격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과목별 전문약사 인력의 수급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에 한정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 서류접수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등 시험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6조(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 전문약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영 제3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①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 등 실시 기관(이하 “자격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5.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제7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시험에서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 자격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8조(응시자격의 제한) ①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2회에 걸쳐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9조(합격자 발표 등) ①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약사 수련 교육 수료증 사본
2. 약사 면허증 사본
3.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3장

③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격자의 성명·생년월일·약사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 전문약사 수련 교육 수료증 사본
3.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장

제10조(자격증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험 실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합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약사 자격 관리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약사 자격 관리대장에 적고 관리해야 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전문약사 자격 인정 번호 및 자격 인정 연월일

3. 전문약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 약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제12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전문약사 자격증의 발급, 갱신,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약사법 시행규칙」 중 약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과목)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정하는 전문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내분비 2. 노인 3. 소아 4. 심혈관 5. 감염 6. 정맥영양 7. 장기이식 8. 종양 9. 중환자 10. 통합약물관리 제3조(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환자약물관리, 연구, 교육, 리더십 등 전문과목별 직무역량 및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및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 제2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전문과목에 한정한다.

2.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 제2조 제10호 전문과목에 한정한다.

3. 위 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 제공 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제2조 제10호 전문과목에 한정한다.

제4조(실무경력 인정기관)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 제2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전문과목에 한정한다.

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 제2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전문과목에 한정한다.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 제2조 제10호 전문과목에 한정한다.

제5조(시험의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과목별 전문약사 인력의 수급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에 한정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 서류접수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등 시험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6조(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영 제3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①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 다)를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 등 실시 기관(이하 “자격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5.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의 100분의 50

제7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시험에서 총
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
로 한다.

③ 자격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8조(응시자격의 제한) ① 부정행위

으로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
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
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2회
에 걸쳐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9조(합격자 발표 등) ① 자격시험관리

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
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
에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전문약사 수련 교육 수료증 사본
2. 약사 면허증 사본
3.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3장

③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합격자의 성명·생년월일·약사면
허번호 및 면허연월일·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 전문약사 수련 교육 수료증 사본
3.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장

제10조(자격증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험
실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합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약사 자격 관리대장) 보건
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약사 자격 관리
대장에 적고 관리해야 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전문약사 자격 인정 번호 및 자격 인
정 연월일
3. 전문약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 약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제12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전문약사 자격증의 발급, 갱신,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약사법 시행
규칙」 중 약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
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응시원서 (년 제 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년 제 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합니다.									
수험 번호		면허 번호		약사면허 취득일		사 전 3.5cm×4.5cm ※ 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인터넷 접수시 50 킬로바이트 이하 jpg 파일)			
성명	(한글)	(한문)		생년월일					
응시과목									
현주소									
국 적		연락처		이메일					
학 력	구분	취득 연월일			수여대학				
	학사								
	석사								
	박사								
실 무 경 력	근무기간			실무경력 인정기관		※ 증빙서류 별도제출			
	~								
전 문 과 목 수 련 교 육	근무기간			수련 교육기관					
	~								
위의 본인은 년 제 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로서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기재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수험의 정지, 합격 의 무효 또는 자격 인정 취소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수험번호	면허번호	수험표		사 전 3.5cm×4.5cm ※ 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인터넷 접수시 50 킬로바이트 이하 jpg 파일)
		제 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성명		생년월일		
응시과목				
※주의: 이 수험표는 자격시험시에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년 월 일 ○○○○○○장(직인)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호
전문약사 자격증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전 문 과 목:
「약사법」 제83조의3 및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